

서울시 양성평등 홍보물 만들기 시리즈 1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란?

* 서울시 양성평등 홍보물 만들기 카드뉴스 시리즈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「2024 서울시 및 투자·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」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.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란?

서울시 및 투자·출연기관의 주요 홍보물을 성인지 관점으로 점검하고
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
기여하는 제도입니다.

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법적근거



서울시

「성별영향평가법」
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
제10조



투자·출연기관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제15조

「성별영향평가법」
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
제5조 등

어떤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나요?

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쇄 홍보물, 보도자료, 영상물, 웹홍보물, 안내방송, 누리집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.

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



서울시

디자인·영상물 심의 대상 홍보물 및
시 보유매체활용 광고물

.....

신규 개설 예정 서울시
누리집(웹사이트) 및 보도자료

※ 그 외 홍보물의 경우 제작부서 자체 점검 또는
제작(발주)시 수시 자문 의뢰(서울시여성가족재단) 가능



투자·출연기관

대시민 홍보용
인쇄물, 영상물, 웹 홍보물,
안내방송, 누리집(웹사이트) 등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

홍보물 기획부터 배포까지 제작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요?

아래의 제작 단계별 검토사항을 확인하며 진행해 보세요.

기획	- 홍보목적 및 주제, 대상을 고려하여 기획방향 설정	
홍보물 제작 전 준비사항	업체 의뢰	직접 제작
	- 업체에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개선사례집 공유 - 성별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준수하도록 의견 전달 또는 과업지시서 명시	-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항목 검토 및 양성평등 이미지 등 자료수집
홍보물 제작	- 홍보물 제작 시 홍보물 체크리스트 활용 고지 -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홍보물 시안 점검	- 유·무료 이미지, 사진, 픽토그램 등의 사용 시 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제작
시안 검토 및 디자인 최종 선정	- 시안 점검 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평가항목 준수 - 평가항목에 따라 홍보물을 수정한 경우, 자체점검 양식에 개선 전/후 작성	
제작완료 및 성별영향평가 의뢰	- 홍보물 및 자체점검 결과(서울시여성가족재단) 제출 -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수신 및 반영 - 홍보물 배포	

홍보물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나요?

홍보물 기획 및 제작 시 아래의 점검 포인트를 고려해 주세요.

평가항목		점검포인트
1	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	1-1.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? 1-2. '여성다움'과 '남성다움'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?
2	성차별적 표현, 비하,외모지상주의	2-1.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? 2-2.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,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?
3	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	3-1. 부부, 연인,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? 3-2.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를 부정적, 소극적 시각(혹은 희화화)으로 바라보는가?
4	구성원(연령, 가족, 장애인, 외국인)의 다양화	4-1.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여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가? 4-2. 다양한 사회 구성원 표현 시, 구성원의 모습을 한정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?
5	성별 대표성 불균형	5-1. 특정 성별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? 5-2. 사업 내용과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물의 이미지가 특정 성별·직업의 이미지로 대표되는가?

다음 카드뉴스에서는 홍보물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카드뉴스를 인용할 때는 공공누리 제4유형(출처 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)에 따라 사용해주세요.
단, 이미지, 일러스트의 일부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,
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

출처표기 예시:

본 저작물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
'저작물명(작성자:서울시여성가족재단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
서울시 양성평등 아카이브 (<http://moa.seoulwomen.or.kr/>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